

1. 개정이유

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(「해양환경관리법」 법률 제18066호, 2021.4.13. 공포, 2021.10.14. 시행)함에 따라, 오염물질 수거·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·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·처리비 징수 근거 조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시행규칙의 종전 근거조항 삭제(제23조제2항)

나.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자가 오염물질을 수거·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의 부과 및 징수,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(안 제83조의2 신설)

-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함
- 해역관리청 등이 오염물질 수거·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

야하며,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처리에 드는 경비,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2(오염물질 수거·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)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해역관리청 또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

② 해역관리청(「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관리청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 비용을

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
2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·운반에 드는 경비
3. 그 밖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3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</u> <u>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·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거·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<u>제23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</u> <u>제83조의2(오염물질 수거·처리비용의 부과 및 징수)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해역관리청 또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</u> <u>② 해역관리청(「해양환경보전</u>

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관리청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 비용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
2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·운반에 드는 경비
3. 그 밖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

	<u>의 지원에 드는 경비</u>
--	--------------------